

[붙임 1] 주요 개정사항

1	산출기준 난이도 조정에 따른 인증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별표 1] 신축 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 세부기준 (제8조 관련) [별표 2] 신축 비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 세부기준 (제8조 관련)																															
3.1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산출기준	3.1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산출기준	• 환경성적표지 제품의 증가에 따라 산출기준 강화 및 탄소발자국 제품 제외																													
<table><tr><th>구분</th><th>환경성선언 제품 사용</th><th>가중치</th></tr><tr><td>1급</td><td>주요 건축부재 4종 이상에서 총 9개 이상의 환경성선언 제품을 사용한 경우</td><td>1.0</td></tr><tr><td>2급</td><td>주요 건축부재 3종 이상에서 총 7개 이상의 환경성선언 제품을 사용한 경우</td><td>0.8</td></tr><tr><td>3급</td><td>주요 건축부재 2종 이상에서 총 5개 이상의 환경성선언 제품을 사용한 경우</td><td>0.6</td></tr><tr><td>4급</td><td>주요 건축부재 1종 이상에서 총 3개 이상의 환경성선언 제품을 사용한 경우</td><td>0.4</td></tr></table> - 환경성선언 제품은 환경성적표지 제품, 탄소발자국 제품을 포함한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 제품을 말하며, 기타 환경성선언 제품으로 인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세칙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정될 수 있음 - 동일한 환경성선언 제품은 최대2종의 건축부재까지 인정함	구분		환경성선언 제품 사용	가중치	1급	주요 건축부재 4종 이상에서 총 9개 이상의 환경성선언 제품을 사용한 경우	1.0	2급	주요 건축부재 3종 이상에서 총 7개 이상의 환경성선언 제품을 사용한 경우	0.8	3급	주요 건축부재 2종 이상에서 총 5개 이상의 환경성선언 제품을 사용한 경우	0.6	4급	주요 건축부재 1종 이상에서 총 3개 이상의 환경성선언 제품을 사용한 경우	0.4	<table><tr><th>구분</th><th>환경성선언 제품 사용</th><th>가중치</th></tr><tr><td>1급</td><td>주요 건축부재 4종 이상에서 총 10개 이상의 환경성선언 제품을 사용한 경우</td><td>1.0</td></tr><tr><td>2급</td><td>주요 건축부재 3종 이상에서 총 8개 이상의 환경성선언 제품을 사용한 경우</td><td>0.8</td></tr><tr><td>3급</td><td>주요 건축부재 2종 이상에서 총 6개 이상의 환경성선언 제품을 사용한 경우</td><td>0.6</td></tr><tr><td>4급</td><td>주요 건축부재 1종 이상에서 총 4개 이상의 환경성선언 제품을 사용한 경우</td><td>0.4</td></tr></table> - 환경성선언 제품은 환경성적표지 제품, 탄소발자국 제품(삭제)을 포함한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 제품을 말하며, 기타 환경성선언 제품으로 인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세칙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정될 수 있음 - 동일한 환경성선언 제품은 최대1종의 건축부재까지 인정함	구분	환경성선언 제품 사용	가중치	1급	주요 건축부재 4종 이상에서 총 10 개 이상의 환경성선언 제품을 사용한 경우	1.0	2급	주요 건축부재 3종 이상에서 총 8 개 이상의 환경성선언 제품을 사용한 경우	0.8	3급	주요 건축부재 2종 이상에서 총 6 개 이상의 환경성선언 제품을 사용한 경우	0.6	4급	주요 건축부재 1종 이상에서 총 4 개 이상의 환경성선언 제품을 사용한 경우
구분	환경성선언 제품 사용	가중치																													
1급	주요 건축부재 4종 이상에서 총 9개 이상의 환경성선언 제품을 사용한 경우	1.0																													
2급	주요 건축부재 3종 이상에서 총 7개 이상의 환경성선언 제품을 사용한 경우	0.8																													
3급	주요 건축부재 2종 이상에서 총 5개 이상의 환경성선언 제품을 사용한 경우	0.6																													
4급	주요 건축부재 1종 이상에서 총 3개 이상의 환경성선언 제품을 사용한 경우	0.4																													
구분	환경성선언 제품 사용	가중치																													
1급	주요 건축부재 4종 이상에서 총 10 개 이상의 환경성선언 제품을 사용한 경우	1.0																													
2급	주요 건축부재 3종 이상에서 총 8 개 이상의 환경성선언 제품을 사용한 경우	0.8																													
3급	주요 건축부재 2종 이상에서 총 6 개 이상의 환경성선언 제품을 사용한 경우	0.6																													
4급	주요 건축부재 1종 이상에서 총 4 개 이상의 환경성선언 제품을 사용한 경우	0.4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3.5 녹색건축자재의 적용비율 산출기준			3.5 녹색건축자재의 적용비율 산출기준			인증취득 현황을 분석하여 항목의 산출기준 강화 (연구 결과 및 환경노동위원회 개선요청 반영)
구분	저탄소 자재 사용	가중치	구분	저탄소 자재 사용	가중치	
1급	녹색건축자재 적용 비율이 건축공사비의 7% 이상인 경우	1.0	1급	녹색건축자재 적용 비율이 건축공사비의 <u>10</u> % 이상인 경우	1.0	
2급	녹색건축자재 적용 비율이 건축공사비의 5% 이상 7% 미만인 경우	0.8	2급	녹색건축자재 적용 비율이 건축공사비의 <u>8</u> % 이상 <u>10</u> % 미만인 경우	0.8	
3급	녹색건축자재 적용 비율이 건축공사비의 3% 이상 5% 미만인 경우	0.6	3급	녹색건축자재 적용 비율이 건축공사비의 <u>6</u> % 이상 <u>8</u> % 미만인 경우	0.6	
4급	녹색건축자재 적용 비율이 건축공사비의 1% 이상 3% 미만인 경우	0.4	4급	녹색건축자재 적용 비율이 건축공사비의 <u>4</u> % 이상 <u>6</u> % 미만인 경우	0.4	
			- 녹색건축자재 적용 비율 신청 시 2개 이상의 자재로 구성되어야 함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ID 혁신적인 녹색건축 계획 및 설계 산출기준 <table> <tr> <th>구분</th><th>혁신적인 녹색건축설계 점수 합계</th><th>가중치</th></tr> <tr> <td>1급</td><td>95점 이상</td><td>1.0</td></tr> <tr> <td>2급</td><td>90점 이상 95점 미만</td><td>0.7</td></tr> <tr> <td>3급</td><td>85점 이상 90점 미만</td><td>0.4</td></tr> </table> <table> <tr> <th colspan="2">혁신적인 녹색건축설계 평가항목</th><th>점수</th></tr> <tr> <td colspan="2">친환경설계</td><td>30</td></tr> <tr> <td colspan="2">통합설계</td><td>30</td></tr> <tr> <td>혁신적인 계획 및 설계 신기술, 신제품 적용</td><td>토지이용 및 교통, 생태환경, 에너지 및 환경오염, 물순환관리, 재료 및 자원, 유지관리, 실내환경 녹색건축관련 신기술, 신제품 적용</td><td>40</td></tr> </table> - 친환경설계는 인증 대상건축물의 주변 환경에 대한 고려, 배치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에 대해 평가함 - 통합설계는 건축물 설계초기단계에서부터 진행된 설계과정에 대해 평가함 - 혁신적인 계획 및 설계는 각 전문분야에 대한 특화된 계획 및 설계의 우수성에 대해 평가함 - 신기술, 신제품은 운영기관 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정받은 기술 또는 제품을 말함 - 신기술, 신제품의 적용은 자원 및 에너지절약 등 녹색건축관련 신기술 등의 적용성에 대해 평가함 ※ 혁신적인 녹색건축 계획 및 설계는 자체평가서가 최우수 및 우수등급으로 신청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평가함 ※ 신기술, 신제품에 대한 평가는 해당 기술, 제품이 해당 공정 또는 부위에 모두 적용될 경우 평가함	구분	혁신적인 녹색건축설계 점수 합계	가중치	1급	95점 이상	1.0	2급	90점 이상 95점 미만	0.7	3급	85점 이상 90점 미만	0.4	혁신적인 녹색건축설계 평가항목		점수	친환경설계		30	통합설계		30	혁신적인 계획 및 설계 신기술, 신제품 적용	토지이용 및 교통, 생태환경, 에너지 및 환경오염, 물순환관리, 재료 및 자원, 유지관리, 실내환경 녹색건축관련 신기술, 신제품 적용	40	ID 혁신적인 녹색건축 계획 및 설계 산출기준 <table> <tr> <th>구분</th><th>혁신적인 녹색건축설계 점수 합계</th><th>가중치</th></tr> <tr> <td>1급</td><td><u>90점 이상</u></td><td>1.0</td></tr> <tr> <td>2급</td><td><u>80점 이상 90점 미만</u></td><td>0.7</td></tr> <tr> <td>3급</td><td><u>60점 이상 80점 미만</u></td><td>0.4</td></tr> </table> <table> <tr> <th colspan="2">혁신적인 녹색건축설계 평가항목</th><th>점수</th></tr> <tr> <td colspan="2"><u>친환경설계(삭제)</u></td><td><u>30(삭제)</u></td></tr> <tr> <td colspan="2">통합설계</td><td><u>0~30</u></td></tr> <tr> <td>혁신적인 계획 및 설계 신기술, 신제품 적용</td><td>토지이용 및 교통, 생태환경, 에너지 및 환경오염, 물순환관리, 재료 및 자원, 유지관리, 실내환경 녹색건축관련 신기술, 신제품 적용</td><td><u>0~70</u></td></tr> </table> - <u>친환경설계는 인증 대상건축물의 주변 환경에 대한 고려, 배치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에 대해 평가함(삭제)</u> - 통합설계는 건축물 설계초기단계에서부터 진행된 설계과정에 대해 평가함 - 혁신적인 계획 및 설계는 각 전문분야에 대한 특화된 계획 및 설계의 우수성에 대해 평가함 - 신기술, 신제품은 운영기관 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정받은 기술 또는 제품을 말함 - 신기술, 신제품의 적용은 자원 및 에너지절약 등 녹색건축관련 신기술 등의 적용성에 대해 평가함 ※ 혁신적인 녹색건축 계획 및 설계는 자체평가서가 최우수 및 우수등급으로 신청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평가함 ※ 신기술, 신제품에 대한 평가는 해당 기술, 제품이 해당 공정 또는 부위에 모두 적용될 경우 평가함	구분	혁신적인 녹색건축설계 점수 합계	가중치	1급	<u>90점 이상</u>	1.0	2급	<u>80점 이상 90점 미만</u>	0.7	3급	<u>60점 이상 80점 미만</u>	0.4	혁신적인 녹색건축설계 평가항목		점수	<u>친환경설계(삭제)</u>		<u>30(삭제)</u>	통합설계		<u>0~30</u>	혁신적인 계획 및 설계 신기술, 신제품 적용	토지이용 및 교통, 생태환경, 에너지 및 환경오염, 물순환관리, 재료 및 자원, 유지관리, 실내환경 녹색건축관련 신기술, 신제품 적용	<u>0~70</u>	• 평가 유연화를 통해 혁신적인 녹색건축 계획 및 설계 범위 확대
구분	혁신적인 녹색건축설계 점수 합계	가중치																																																
1급	95점 이상	1.0																																																
2급	90점 이상 95점 미만	0.7																																																
3급	85점 이상 90점 미만	0.4																																																
혁신적인 녹색건축설계 평가항목		점수																																																
친환경설계		30																																																
통합설계		30																																																
혁신적인 계획 및 설계 신기술, 신제품 적용	토지이용 및 교통, 생태환경, 에너지 및 환경오염, 물순환관리, 재료 및 자원, 유지관리, 실내환경 녹색건축관련 신기술, 신제품 적용	40																																																
구분	혁신적인 녹색건축설계 점수 합계	가중치																																																
1급	<u>90점 이상</u>	1.0																																																
2급	<u>80점 이상 90점 미만</u>	0.7																																																
3급	<u>60점 이상 80점 미만</u>	0.4																																																
혁신적인 녹색건축설계 평가항목		점수																																																
<u>친환경설계(삭제)</u>		<u>30(삭제)</u>																																																
통합설계		<u>0~30</u>																																																
혁신적인 계획 및 설계 신기술, 신제품 적용	토지이용 및 교통, 생태환경, 에너지 및 환경오염, 물순환관리, 재료 및 자원, 유지관리, 실내환경 녹색건축관련 신기술, 신제품 적용	<u>0~70</u>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별표 1] 신축 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 세부기준 (제8조 관련)																																																							
4.3 절수형 기기 사용			4.3 절수형 기기 사용			• 환경부 환경표지 대상제품 기준의 분류에 따라 절수방법 분류 명확하게 함																																																	
산출기준			산출기준																																																				
<table><tr><th>구분</th><th colspan="2">용도별 절수방법</th><th>점수</th></tr><tr><td rowspan="3">환경표지 (마크) 인증 대상제품군</td><td>절수형 수도꼭지</td><td>즉시지수형(전자감응식, 패달 및 풋밸브 방식) 지폐식, 정량지수형, 수도꼭지 절수부속</td><td>1</td></tr><tr><td>샤워헤드</td><td>밸브부착 샤워헤드, 가폐방식 샤워헤드, 즉시지수방식 샤워헤드, 기타 절수용 샤워헤드</td><td>1</td></tr><tr><td>절수형 변기</td><td>절수형 양변기</td><td>1</td></tr><tr><td rowspan="2">물 사용 절감률</td><td colspan="2">20% 이상</td><td>2</td></tr><tr><td colspan="2">10% 이상 20% 미만</td><td>1</td></tr><tr><td>감압밸브</td><td colspan="2">세대별 감압밸브 설치(급수압력이 0.245MPa이하)</td><td>1</td></tr></table>			구분	용도별 절수방법			점수	환경표지 (마크) 인증 대상제품군	절수형 수도꼭지	즉시지수형(전자감응식, 패달 및 풋밸브 방식) 지폐식, 정량지수형, 수도꼭지 절수부속	1	샤워헤드	밸브부착 샤워헤드, 가폐방식 샤워헤드, 즉시지수방식 샤워헤드, 기타 절수용 샤워헤드	1	절수형 변기	절수형 양변기	1	물 사용 절감률	20% 이상		2	10% 이상 20% 미만		1	감압밸브	세대별 감압밸브 설치(급수압력이 0.245MPa이하)		1	<table><tr><th>구분</th><th colspan="2">용도별 절수방법</th><th>점수</th></tr><tr><td rowspan="3">환경표지 (마크) 인증 대상제품군</td><td colspan="2"><u>EL221 절수형 수도꼭지</u></td><td>1</td></tr><tr><td colspan="2"><u>EL222 샤워헤드 및 수도꼭지 절수 부속</u></td><td>1</td></tr><tr><td colspan="2"><u>EL223 절수형 양변기</u></td><td>1</td></tr><tr><td rowspan="2">물 사용 절감률</td><td colspan="2">20% 이상</td><td>2</td></tr><tr><td colspan="2">10% 이상 20% 미만</td><td>1</td></tr><tr><td>감압밸브</td><td colspan="2">세대별 감압밸브 설치(급수압력이 0.245MPa이하)</td><td>1</td></tr></table>			구분	용도별 절수방법		점수	환경표지 (마크) 인증 대상제품군	<u>EL221 절수형 수도꼭지</u>		1	<u>EL222 샤워헤드 및 수도꼭지 절수 부속</u>		1	<u>EL223 절수형 양변기</u>		1	물 사용 절감률	20% 이상		2	10% 이상 20% 미만		1	감압밸브	세대별 감압밸브 설치(급수압력이 0.245MPa이하)	
구분	용도별 절수방법		점수																																																				
환경표지 (마크) 인증 대상제품군	절수형 수도꼭지	즉시지수형(전자감응식, 패달 및 풋밸브 방식) 지폐식, 정량지수형, 수도꼭지 절수부속	1																																																				
	샤워헤드	밸브부착 샤워헤드, 가폐방식 샤워헤드, 즉시지수방식 샤워헤드, 기타 절수용 샤워헤드	1																																																				
	절수형 변기	절수형 양변기	1																																																				
물 사용 절감률	20% 이상		2																																																				
	10% 이상 20% 미만		1																																																				
감압밸브	세대별 감압밸브 설치(급수압력이 0.245MPa이하)		1																																																				
구분	용도별 절수방법		점수																																																				
환경표지 (마크) 인증 대상제품군	<u>EL221 절수형 수도꼭지</u>		1																																																				
	<u>EL222 샤워헤드 및 수도꼭지 절수 부속</u>		1																																																				
	<u>EL223 절수형 양변기</u>		1																																																				
물 사용 절감률	20% 이상		2																																																				
	10% 이상 20% 미만		1																																																				
감압밸브	세대별 감압밸브 설치(급수압력이 0.245MPa이하)		1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7.4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산출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th><th>단위세대 가중치</th></tr> </thead> <tbody> <tr> <td>1급</td><td>난방장치의 세대별 일괄 가동·정지(on/off)에 대한 시간대별 제어가 가능하며, 실별로도 시간대별 온도제어가 가능한 온도조절기와 온도조절 밸브 설치</td><td>1.0</td></tr> <tr> <td>2급</td><td>난방장치의 세대별 일괄 가동·정지(on/off)에 대한 시간대별 제어가 가능하며, 실별로는 온도제어가 가능한 온도조절기와 온도조절 밸브 설치</td><td>0.8</td></tr> <tr> <td>3급</td><td>난방장치의 세대별 일괄 가동·정지(on/off)가 가능하며 실별 온도제어가 가능한 온도조절기와 온도조절 밸브 설치</td><td>0.6</td></tr> <tr> <td>4급</td><td>난방장치의 세대별 일괄 가동·정지(on/off)가 가능한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td><td>0.4</td></tr> </tbody> </table>	구분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단위세대 가중치	1급	난방장치의 세대별 일괄 가동·정지(on/off)에 대한 시간대별 제어가 가능하며, 실별로도 시간대별 온도제어가 가능한 온도조절기와 온도조절 밸브 설치	1.0	2급	난방장치의 세대별 일괄 가동·정지(on/off)에 대한 시간대별 제어가 가능하며, 실별로는 온도제어가 가능한 온도조절기와 온도조절 밸브 설치	0.8	3급	난방장치의 세대별 일괄 가동·정지(on/off)가 가능하며 실별 온도제어가 가능한 온도조절기와 온도조절 밸브 설치	0.6	4급	난방장치의 세대별 일괄 가동·정지(on/off)가 가능한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0.4	7.4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산출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th><th>단위세대 가중치</th></tr> </thead> <tbody> <tr> <td>1급</td><td>난방장치의 세대별 일괄 가동·정지(on/off)에 대한 시간대별 제어가 가능하며, 실별 로도(삭제) 시간대별 온도제어가 가능한 온도조절기와 온도조절 밸브 설치</td><td>1.0</td></tr> <tr> <td>2급</td><td>난방장치의 세대별 일괄 가동·정지(on/off)에 대한 시간대별 제어가 가능 하거나, 실별로는(삭제) <u>시간대별</u> 온도제어가 가능한 온도조절기와 온도조절 밸브 설치</td><td>0.8</td></tr> <tr> <td>3급</td><td>난방장치의 세대별 일괄 가동·정지(on/off)가 가능하며, 실별 온도제어가 가능한 온도조절기와 온도조절 밸브 설치</td><td>0.6</td></tr> <tr> <td>4급</td><td>난방장치의 세대별 일괄 가동·정지(on/off)가 가능 하거나, 실별 온도제어가 가능한 온도조절기와 온도조절 밸브 설치</td><td>0.4</td></tr> </tbody> </table>	구분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단위세대 가중치	1급	난방장치의 세대별 일괄 가동·정지(on/off)에 대한 시간대별 제어가 가능하며, 실별 로도(삭제) 시간대별 온도제어가 가능한 온도조절기와 온도조절 밸브 설치	1.0	2급	난방장치의 세대별 일괄 가동·정지(on/off)에 대한 시간대별 제어가 가능 하거나, 실별로는(삭제) <u>시간대별</u> 온도제어가 가능한 온도조절기와 온도조절 밸브 설치	0.8	3급	난방장치의 세대별 일괄 가동·정지(on/off)가 가능하며, 실별 온도제어가 가능한 온도조절기와 온도조절 밸브 설치	0.6	4급	난방장치의 세대별 일괄 가동·정지(on/off)가 가능 하거나, 실별 온도제어가 가능한 온도조절기와 온도조절 밸브 설치	0.4	세대/실별 온도조절에 대한 문구 및 등급 간 구분을 명확하게 함
구분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단위세대 가중치																														
1급	난방장치의 세대별 일괄 가동·정지(on/off)에 대한 시간대별 제어가 가능하며, 실별로도 시간대별 온도제어가 가능한 온도조절기와 온도조절 밸브 설치	1.0																														
2급	난방장치의 세대별 일괄 가동·정지(on/off)에 대한 시간대별 제어가 가능하며, 실별로는 온도제어가 가능한 온도조절기와 온도조절 밸브 설치	0.8																														
3급	난방장치의 세대별 일괄 가동·정지(on/off)가 가능하며 실별 온도제어가 가능한 온도조절기와 온도조절 밸브 설치	0.6																														
4급	난방장치의 세대별 일괄 가동·정지(on/off)가 가능한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0.4																														
구분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단위세대 가중치																														
1급	난방장치의 세대별 일괄 가동·정지(on/off)에 대한 시간대별 제어가 가능하며, 실별 로도(삭제) 시간대별 온도제어가 가능한 온도조절기와 온도조절 밸브 설치	1.0																														
2급	난방장치의 세대별 일괄 가동·정지(on/off)에 대한 시간대별 제어가 가능 하거나, 실별로는(삭제) <u>시간대별</u> 온도제어가 가능한 온도조절기와 온도조절 밸브 설치	0.8																														
3급	난방장치의 세대별 일괄 가동·정지(on/off)가 가능하며, 실별 온도제어가 가능한 온도조절기와 온도조절 밸브 설치	0.6																														
4급	난방장치의 세대별 일괄 가동·정지(on/off)가 가능 하거나, 실별 온도제어가 가능한 온도조절기와 온도조절 밸브 설치	0.4																														
7.9 화장실 급배수 소음 산출기준 주3) 저소음형 배수관에는 배관 내에 소음저감을 목적으로 장치나 부품(재료 포함) 등을 설치하는 공법을 포함하며, 동일한 장소(공동주택 화장실이나 이와 동등하게 구축된 시험용 주택의 화장실) 및 측정조건(동일한 변기 타입, 동일한 배수량, 하부층의 천장마감이 없는 상태 등)에서 실시한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KS M 3404)과 측정대상 배수관(공법 포함)과의 최대 소음도(Lmax) 차이로써 판단함	7.9 화장실 급배수 소음 산출기준 주3) 저소음형 배수관에는 배관 내에 소음저감을 목적으로 장치나 부품(재료 포함) 등을 설치하는 공법을 포함하며, 동일한 장소(공동주택 화장실이나 이와 동등하게 구축된 시험용 주택의 화장실) 및 측정조건(동일한 변기 타입, 세면대, 욕조 타입(욕실 모든 배수관), 동일한 배수량, 하부층의 천장마감이 없는 상태 등)에서 실시한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KS M 3404)과 측정대상 배수관(공법 포함)과의 최대 소음도(Lmax) 차이로써 판단함	저소음형 배수관에 대한 조건을 명확 하게함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8.11 내화성능 산출기준			8.11 내화성능 산출기준			3급의 내용(전 층 수직공용부 내화충전재 설치)이 1급 및 2급에 포함되도록 산출기준을 명확하게 함 (해설서 기 반영 내용)
구분	등급기준	성능등급	구분	등급기준	성능등급	
1급	법규상의 내화구조에 콘크리트피복두께 20mm 증가 또는 철골내화피복두께 10mm 증가 적용	★★★★	1급	법규상의 내화구조에 콘크리트피복두께 20mm 증가, 전 층 수직공용부 내화충전재 설치 또는 철골내화피복두께 10mm 증가 적용	★★★★	
2급	법규상의 내화구조에 콘크리트피복두께 15mm 증가 또는 철골내화피복두께 5mm 증가 적용	★★★	2급	법규상의 내화구조에 콘크리트피복두께 15mm 증가, 전 층 수직공용부 내화충전재 설치 또는 철골내화피복두께 5mm 증가 적용	★★★	
3급	법규상의 내화구조에 콘크리트피복두께 10mm 증가, 전 층 수직공용부 내화충전재 설치	★★	3급	법규상의 내화구조에 콘크리트피복두께 10mm 증가, 전 층 수직공용부 내화충전재 설치	★★	
4급	건축법상의 내화성능을 확보한 구조	★	4급	건축법상의 내화성능을 확보한 구조	★	

[별표 2] 신축 비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 세부기준 (제8조 관련)

2.2 시험·조정·평가(TAB) 및 커미셔닝 실시

산출기준

구분	TAB 및 커미셔닝 실시 여부	가중치
1급	커미셔닝을 실시한 경우	1.0
2급	TAB를 실시한 경우	0.3

- 커미셔닝 필수대상은 공기조화시스템(HVAC), 자동제어시스템(BAS), 조명 및 조명제어시스템, 신·재생에너지시스템을 말함
- 커미셔닝은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함
 - 건축주요구(Owner's Project Requirement, OPR) 및 설계의도(Basis of Design, BOD)에 의한 도면검토 결과서
 - 주요 냉, 난방 및 급탕에 관한 장비와 시스템의 운전작동순서 (Sequence of Operation, SOO,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적용시 포함)
 - 주요 냉, 난방 및 급탕에 관한 장비와 시스템의 설치, 시운전 및 성능점검에 대한 점검표(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적용시 포함)
 - 커미셔닝 수행계획서 및 결과(예정)보고서
- TAB 수행기관은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 TAB 전문 업체를 말함
- 커미셔닝 수행기관은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 커미셔닝 전문 업체를 말함(단, 대상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에 직접 참여하는 업체 제외)

2.2 시험·조정·평가(TAB) 및 커미셔닝 실시

산출기준

구분	TAB 및 커미셔닝 실시 여부	가중치
1급	커미셔닝을 실시한 경우	1.0
2급	TAB를 실시한 경우	0.3

- 커미셔닝 필수대상은 공기조화시스템(HVAC), 자동제어시스템(BAS), 조명 및 조명제어시스템, 신·재생에너지시스템을 말함
- 커미셔닝은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함
 - 건축주요구(Owner's Project Requirement, OPR) 및 설계의도(Basis of Design, BOD)에 의한 도면검토 결과서
 - 주요 냉, 난방 및 급탕에 관한 장비와 시스템의 운전작동순서 (Sequence of Operation, SOO,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적용시 포함)
 - 주요 냉, 난방 및 급탕에 관한 장비와 시스템의 설치, 시운전 및 성능점검에 대한 점검표(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적용시 포함)
 - 커미셔닝 수행계획서 및 결과(예정)보고서
- 커미셔닝 결과보고서는 준공 후 10개월까지 건물 운영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녹색건축 인증서 발급 18개월 이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TAB 수행기관은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 TAB 전문 업체를 말함
- 커미셔닝 수행기관은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 커미셔닝 전문 업체를 말함(단, 대상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에 직접 참여하는 업체 제외)
- TAB 및 커미셔닝 수행기관은 대상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에 직접 참여하는 업체는 제외함

- 커미셔닝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산출기준 명확하게 함 (해설서 기 반영 내용)

4.3 절수형 기기 사용

산출기준

구분	용도별 절수방법		점수
환경표지 (마크) 인증 대상제품군	절수형 수도꼭지	즉시지수형(전자감응식, 패달 및 풋밸브 방식) 지폐식, 정량지수형, 수도꼭지 절수부속	1
	샤워헤드	밸브부착 샤워헤드, 가폐방식 샤워헤드, 즉시지수형식 샤워헤드, 기타 절수용 샤워헤드	1
	절수형 변기	절수형 양변기	1
소변기	모든 소변기에 환경표지(마크) 인증 대상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1
	물을 사용하지 않는 소변기를 적용한 경우		
물 사용 절감률	20% 이상		2
	10% 이상 20% 미만		1
감압밸브	총별 감압밸브 설치(급수압력이 0.245MPa이하)		1

4.3 절수형 기기 사용

산출기준

구분	용도별 절수방법		점수
환경표지(마크) 인증 대상제품군	<u>EL221 절수형 수도꼭지</u>		1
	<u>EL222 샤워헤드 및 수도꼭지 절수 부속</u>		1
	<u>EL223 절수형 양변기</u>		1
소변기	모든 소변기에 환경표지(마크) 인증 대상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1
	<u>물을 사용하지 않는 소변기를 전체 소변 기에 10%이상 적용한 경우</u>		1
물 사용 절감률	20% 이상		2
	10% 이상 20% 미만		1
감압밸브	총별 감압밸브 설치(급수압력이 0.245MPa이하)		1

- 환경부 환경표지 대상제품 기준의 분류에 따라 절수방법 분류 명확하게 함
- 기존 1개 이상만 적용하면 점수를 받던 무수소변기의 적용 확대를 위하여 적용 비율 추가 및 추가점수 부여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별표 1] 신축 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 세부기준 (제8조 관련) [별표 2] 신축 비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 세부기준 (제8조 관련)																																							
4.1 빗물관리 산출기준 <table><tr><th>구분</th><th>빗물관리 용량을 저장·관리하는 시설 설치</th><th>가중치</th></tr><tr><td>1급</td><td>빗물관리 면적(m²) × 0.03(m) 이상의 용량(m³)을 관리할 수 있는 저영향개발(LID)기법 또는 그린인프라(GI)시설 설치 및 전체 불투수면 80% 이상의 면적이 연계된 경우</td><td>1.0</td></tr><tr><td>2급</td><td>빗물관리 면적(m²) × 0.02(m) 이상의 용량(m³)을 관리할 수 있는 저영향개발(LID)기법 또는 그린인프라(GI)시설 설치 및 전체 불투수면 80% 이상의 면적이 연계된 경우</td><td>0.8</td></tr><tr><td>3급</td><td>빗물관리 면적(m²) × 0.01(m) 이상의 용량(m³)을 관리할 수 있는 저영향개발(LID)기법 또는 그린인프라(GI)시설 설치 및 전체 불투수면 50% 이상의 면적이 연계된 경우</td><td>0.6</td></tr><tr><td>4급</td><td>빗물관리 면적(m²) × 0.005(m) 이상의 용량(m³)을 관리할 수 있는 저영향개발(LID)기법 또는 그린인프라(GI)시설 설치 및 전체 불투수면 50% 이상의 면적이 연계된 경우</td><td>0.4</td></tr></table>	구분	빗물관리 용량을 저장·관리하는 시설 설치	가중치	1급	빗물관리 면적(m ²) × 0.03(m) 이상의 용량(m ³)을 관리할 수 있는 저영향개발(LID)기법 또는 그린인프라(GI)시설 설치 및 전체 불투수면 80% 이상의 면적이 연계된 경우	1.0	2급	빗물관리 면적(m ²) × 0.02(m) 이상의 용량(m ³)을 관리할 수 있는 저영향개발(LID)기법 또는 그린인프라(GI)시설 설치 및 전체 불투수면 80% 이상의 면적이 연계된 경우	0.8	3급	빗물관리 면적(m ²) × 0.01(m) 이상의 용량(m ³)을 관리할 수 있는 저영향개발(LID)기법 또는 그린인프라(GI)시설 설치 및 전체 불투수면 50% 이상의 면적이 연계된 경우	0.6	4급	빗물관리 면적(m ²) × 0.005(m) 이상의 용량(m ³)을 관리할 수 있는 저영향개발(LID)기법 또는 그린인프라(GI)시설 설치 및 전체 불투수면 50% 이상의 면적이 연계된 경우	0.4	4.1 빗물관리 산출기준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빗물관리 기법(시설) 적용 용량 및 불투수면 연계면적 비율</th><th rowspan="2">가중치</th></tr><tr><th>적용 용량(m³)</th><th>연계면적 비율(%)</th></tr><tr><td>1급</td><td>빗물관리 면적(m²) × 0.03(m) 이상</td><td>전체 불투수면적의 80% 이상</td><td>1.0</td></tr><tr><td>2급</td><td>빗물관리 면적(m²) × 0.02(m) 이상</td><td>전체 불투수면적의 80% 이상</td><td>0.8</td></tr><tr><td>3급</td><td>빗물관리 면적(m²) × 0.01(m) 이상</td><td>전체 불투수면적의 50% 이상</td><td>0.6</td></tr><tr><td>4급</td><td>빗물관리 면적(m²) × 0.005(m) 이상</td><td>전체 불투수면적의 50% 이상</td><td>0.4</td></tr></table>	구분	빗물관리 기법(시설) 적용 용량 및 불투수면 연계면적 비율		가중치	적용 용량(m ³)	연계면적 비율(%)	1급	빗물관리 면적(m ²) × 0.03(m) 이상	전체 불투수면적의 80% 이상	1.0	2급	빗물관리 면적(m ²) × 0.02(m) 이상	전체 불투수면적의 80% 이상	0.8	3급	빗물관리 면적(m ²) × 0.01(m) 이상	전체 불투수면적의 50% 이상	0.6	4급	빗물관리 면적(m ²) × 0.005(m) 이상	전체 불투수면적의 50% 이상	0.4	현행기준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동일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여 산출기준을 명확하게 함
구분	빗물관리 용량을 저장·관리하는 시설 설치	가중치																																					
1급	빗물관리 면적(m ²) × 0.03(m) 이상의 용량(m ³)을 관리할 수 있는 저영향개발(LID)기법 또는 그린인프라(GI)시설 설치 및 전체 불투수면 80% 이상의 면적이 연계된 경우	1.0																																					
2급	빗물관리 면적(m ²) × 0.02(m) 이상의 용량(m ³)을 관리할 수 있는 저영향개발(LID)기법 또는 그린인프라(GI)시설 설치 및 전체 불투수면 80% 이상의 면적이 연계된 경우	0.8																																					
3급	빗물관리 면적(m ²) × 0.01(m) 이상의 용량(m ³)을 관리할 수 있는 저영향개발(LID)기법 또는 그린인프라(GI)시설 설치 및 전체 불투수면 50% 이상의 면적이 연계된 경우	0.6																																					
4급	빗물관리 면적(m ²) × 0.005(m) 이상의 용량(m ³)을 관리할 수 있는 저영향개발(LID)기법 또는 그린인프라(GI)시설 설치 및 전체 불투수면 50% 이상의 면적이 연계된 경우	0.4																																					
구분	빗물관리 기법(시설) 적용 용량 및 불투수면 연계면적 비율		가중치																																				
	적용 용량(m ³)	연계면적 비율(%)																																					
1급	빗물관리 면적(m ²) × 0.03(m) 이상	전체 불투수면적의 80% 이상	1.0																																				
2급	빗물관리 면적(m ²) × 0.02(m) 이상	전체 불투수면적의 80% 이상	0.8																																				
3급	빗물관리 면적(m ²) × 0.01(m) 이상	전체 불투수면적의 50% 이상	0.6																																				
4급	빗물관리 면적(m ²) × 0.005(m) 이상	전체 불투수면적의 50% 이상	0.4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4.2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산출기준			4.2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산출기준			- 현행기준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동일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여 산출기준을 명확하게 함 -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시설 연계비율의 경우 해설서 기 반영 내용임
구분	빗물·유출지하수의 저수조 용량(m³) 및 직접이용 시설 설치	가중치	구분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계획(시설) 적용 용량 및 연계면적 비율	가중치	
1급	건축면적(m²) × 0.03(m) 이상의 빗물·유출지하수의 저수조 설치 또는 직접이용시설을 계획한 경우	1.0	1급	적용 용량(m³) 건축면적(m²) × 0.03(m) 이상	연계면적 비율(%) 건축면적의 100%	1.0
2급	건축면적(m²) × 0.02(m) 이상의 빗물·유출지하수의 저수조 설치 또는 직접이용시설을 계획한 경우	0.8	2급	건축면적(m²) × 0.02(m) 이상	건축면적의 67% 이상	0.8
3급	건축면적(m²) × 0.01(m) 이상의 빗물·유출지하수의 저수조 설치 또는 직접이용시설을 계획한 경우	0.6	3급	건축면적(m²) × 0.01(m) 이상	건축면적의 34% 이상	0.6
4급	건축면적(m²) × 0.005(m) 이상의 빗물·유출지하수의 저수조 설치 또는 직접이용시설을 계획한 경우	0.4	4급	건축면적(m²) × 0.005(m) 이상	건축면적의 17% 이상	0.4
4.4 물 사용량 모니터링 산출기준			4.4 물 사용량 모니터링 산출기준			1,2급의 구분 명확하게 함 : 1급의 경우 2급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2급 내용 문구 정리
구분	물 사용량 모니터링 및 관리	가중치	구분	물 사용량 모니터링 및 관리	가중치	
1급	2급 + 물 사용량 계측기 및 물 소비량을 관리할 수 있는 수도물 관리 프로그램과 장치를 설치하여 물 소비량을 감시, 관리하는 경우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해당 시설에 대한 물소비량 감시, 관리가 가능해야 함)	1.0	1급	2급 + <u>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이 연동되어 실시간</u> 물 소비량을 감시, 관리하는 경우	1.0	
2급	3급 + 물 사용량 계측기 및 물 소비량을 관리할 수 있는 수도물 관리 프로그램과 장치를 설치하여 물 소비량을 감시, 관리하는 경우	0.8	2급	3급 + 물 사용량 계측기 및 물 소비량을 관리할 수 있는 수도물 관리 프로그램과 장치를 설치하여 물 소비량을 감시, 관리하는 경우	0.8	
3급	4급 + 건축물 내 모니터링 장치를 통해서 물 사용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0.6	3급	4급 + 건축물 내 모니터링 장치를 통해서 물 사용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0.6	
4급	건축물 전체에 설치된 물 사용량 측정 계량기의 100%가 환경표지(마크) 인증을 받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계량기인 경우	0.4	4급	건축물 전체에 설치된 물 사용량 측정 계량기의 100%가 환경표지(마크) 인증을 받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계량기인 경우	0.4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ID 녹색건설현장 환경관리 수행 산출기준			ID 녹색건설현장 환경관리 수행 산출기준			건설현장 환경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을 명시하여 산출 기준을 명확하게 함 (해설서 기 반영내용)
구 분	건설현장 환경관리의 수행	가중치	구 분	건설현장 환경관리의 수행	가중치	
1급	건설현장 환경관리 수행범위의 모든 항목을 수행한 경우	1.0	1급	건설현장 환경관리 수행범위의 모든 항목을 수행한 경우	1.0	
2급	3급 + 건설현장 환경관리 수행범위의 (1), (2), (3) 중 1개 이상의 항목을 수행한 경우	0.8	2급	3급 + 건설현장 환경관리 수행범위의 (1), (2), (3) 중 1개 이상의 항목을 수행한 경우	0.8	건설현장 환경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을 명시하여 산출 기준을 명확하게 함 (해설서 기 반영내용)
3급	4급 + 건설현장 환경관리 수행범위의 (4) 항목을 수행한 경우	0.6	3급	4급 + 건설현장 환경관리 수행범위의 (4) 항목을 수행한 경우	0.6	
4급	건설현장 환경관리 수행범위 중 (5), (6), (7) 항목을 수행한 경우	0.4	4급	건설현장 환경관리 수행범위 중 (5), (6), (7) 항목을 수행한 경우	0.4	
			- <u>건설현장 환경관리 수행범위 (1), (2), (3)의 모니터링은 월 간격으로 기록되어 있어야하며, 설정된 목표와 부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u>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별표 1] 신축 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 세부기준 (제8조 관련)																								
2.5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산출기준		2.5 오존층 보호 및 지구온난화 저감 산출기준		• 오존층파괴지수 및 지구온난화지수 강화 (환경부 요청)																				
<table><tr><th>오존층 보호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th><th>점수</th></tr><tr><td>전체 소요 단열재의 80% 이상이 오존층파괴지수(ODP)가 0.003 이하이며, 지구온난화지수(GWP)가 100 이하인 경우</td><td>1</td></tr><tr><td>냉방기기 냉매의 오존층파괴지수(ODP)가 0.003 이하이며, 지구온난화지수(GWP)가 50 이하인 경우</td><td>2</td></tr><tr><td>냉방기기 냉매의 오존층파괴지수(ODP)가 0.003 이하이며, 지구온난화지수(GWP)가 3000 이하인 경우</td><td>1</td></tr><tr><td>환경표지(마크) 인증을 받은 보일러 또는 저녹스버너로 인정받은 제품을 채택한 보일러를 적용한 경우</td><td>1</td></tr></table>		오존층 보호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점수		전체 소요 단열재의 80% 이상이 오존층파괴지수(ODP)가 0.003 이하이며, 지구온난화지수(GWP)가 100 이하인 경우	1	냉방기기 냉매의 오존층파괴지수(ODP)가 0.003 이하이며, 지구온난화지수(GWP)가 50 이하인 경우	2	냉방기기 냉매의 오존층파괴지수(ODP)가 0.003 이하이며, 지구온난화지수(GWP)가 3000 이하인 경우	1	환경표지(마크) 인증을 받은 보일러 또는 저녹스버너로 인정받은 제품을 채택한 보일러를 적용한 경우	1	<table><tr><th>오존층 보호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th><th>점수</th></tr><tr><td>전체 소요 단열재의 80% 이상이 오존층파괴지수(ODP)가 0이며, 지구온난화지수(GWP)가 100 이하인 경우</td><td>1</td></tr><tr><td>냉방기기 냉매의 오존층파괴지수(ODP)가 0 이며, 지구온난화지수(GWP)가 50 이하인 경우</td><td>2</td></tr><tr><td>냉방기기 냉매의 오존층파괴지수(ODP)가 0 이며, 지구온난화지수(GWP)가 50 초과 750 이하인 경우</td><td>1</td></tr><tr><td>환경표지(마크) 인증을 받은 보일러 또는 저녹스버너로 인정받은 제품을 채택한 보일러를 적용한 경우</td><td>1</td></tr></table>		오존층 보호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점수	전체 소요 단열재의 80% 이상이 오존층파괴지수(ODP)가 0이며, 지구온난화지수(GWP)가 100 이하인 경우	1	냉방기기 냉매의 오존층파괴지수(ODP)가 0 이며, 지구온난화지수(GWP)가 50 이하인 경우	2	냉방기기 냉매의 오존층파괴지수(ODP)가 0 이며, 지구온난화지수(GWP)가 50 초과 750 이하인 경우	1	환경표지(마크) 인증을 받은 보일러 또는 저녹스버너로 인정받은 제품을 채택한 보일러를 적용한 경우	1
오존층 보호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점수																							
전체 소요 단열재의 80% 이상이 오존층파괴지수(ODP)가 0.003 이하이며, 지구온난화지수(GWP)가 100 이하인 경우	1																							
냉방기기 냉매의 오존층파괴지수(ODP)가 0.003 이하이며, 지구온난화지수(GWP)가 50 이하인 경우	2																							
냉방기기 냉매의 오존층파괴지수(ODP)가 0.003 이하이며, 지구온난화지수(GWP)가 3000 이하인 경우	1																							
환경표지(마크) 인증을 받은 보일러 또는 저녹스버너로 인정받은 제품을 채택한 보일러를 적용한 경우	1																							
오존층 보호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점수																							
전체 소요 단열재의 80% 이상이 오존층파괴지수(ODP)가 0이며, 지구온난화지수(GWP)가 100 이하인 경우	1																							
냉방기기 냉매의 오존층파괴지수(ODP)가 0 이며, 지구온난화지수(GWP)가 50 이하인 경우	2																							
냉방기기 냉매의 오존층파괴지수(ODP)가 0 이며, 지구온난화지수(GWP)가 50 초과 750 이하인 경우	1																							
환경표지(마크) 인증을 받은 보일러 또는 저녹스버너로 인정받은 제품을 채택한 보일러를 적용한 경우	1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7.3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산출기준 <table border="1" data-bbox="165 325 873 853"> <thead> <tr> <th>구분</th><th>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th><th>단위세대 가중치</th></tr> </thead> <tbody> <tr> <td>1급</td><td>2급 + 혼합형(하이브리드) 환기설비를 설치한 경우 또는 단위세대 내에서 실별로 실내공기 오염물질이 측정되고 이에 따른 환기풍량이 자동으로 제어가 되는 경우</td><td>1.0</td></tr> <tr> <td>2급</td><td>3급 + 단위세대 내에서 실내공기 오염물질이 측정되고 이에 따른 환기풍량이 자동으로 제어가 되며, 기계환기설비는 급기 및 배기가 동시에 가동되는 환경에서 바이패스 기능을 확보한 경우</td><td>0.8</td></tr> <tr> <td>3급</td><td>「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별표3]의 효율적인 환기성능의 확보에 적합한 환기설비가 설치된 경우</td><td>0.6</td></tr> <tr> <td>4급</td><td>단위세대 내에서 시간당 0.5회에 상응하는 환기회수의 확보가 가능한 환기설비(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가 설치된 경우</td><td>0.4</td></tr> </tbody> </table>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별표3]의 효율적인 환기성능의 확보에 적합한 환기설비는 자연환기설비, 기계환기설비(열회수 환기장치로 설치하여야 함), 혼합형(하이브리드) 환기설비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한 경우임 - 혼합형(하이브리드) 환기설비는 자연 및 기계환기 설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환기설비를 말함 - 실내공기 오염물질은 초미세먼지(PM2.5) 및 이산화탄소(CO2)를 포함하여 측정할 수 있어야 함 - 공동주택성능등급의 경우에는 전체 세대가 각 등급에 적합하게 적용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구분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단위세대 가중치	1급	2급 + 혼합형(하이브리드) 환기설비를 설치한 경우 또는 단위세대 내에서 실별로 실내공기 오염물질이 측정되고 이에 따른 환기풍량이 자동으로 제어가 되는 경우	1.0	2급	3급 + 단위세대 내에서 실내공기 오염물질이 측정되고 이에 따른 환기풍량이 자동으로 제어가 되며, 기계환기설비는 급기 및 배기가 동시에 가동되는 환경에서 바이패스 기능을 확보한 경우	0.8	3급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별표3]의 효율적인 환기성능의 확보에 적합한 환기설비가 설치된 경우	0.6	4급	단위세대 내에서 시간당 0.5회에 상응하는 환기회수의 확보가 가능한 환기설비(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가 설치된 경우	0.4	7.3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산출기준 <table border="1" data-bbox="896 325 1603 887"> <thead> <tr> <th>구분</th><th>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th><th>단위세대 가중치</th></tr> </thead> <tbody> <tr> <td>1급</td><td>2급 + 혼합형(하이브리드) 환기설비를 설치한 경우 또는 (삭제) 단위세대 내에서 실별로 실내공기 오염물질이 측정되고 이에 따른 환기풍량이 자동으로 제어가 되는 경우</td><td>1.0</td></tr> <tr> <td>2급</td><td>3급 + 단위세대 내에서 실내공기 오염물질이 측정되고 이에 따른 환기풍량이 자동으로 제어가 되는 경우 기계환기설비는 급기 및 배기가 동시에 가동되는 환경에서 바이패스 기능을 확보한 경우(삭제)</td><td>0.8</td></tr> <tr> <td>3급</td><td>「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별표3]의 효율적인 환기성능의 확보에 적합한 환기설비가 설치된 경우</td><td>0.6</td></tr> <tr> <td>4급</td><td>단위세대 내에서 시간당 0.5회에 상응하는 환기회수의 확보가 가능한 환기설비(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삭제)가 설치된 경우</td><td>0.4</td></tr> </tbody> </table>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별표3]의 효율적인 환기성능의 확보에 적합한 환기설비는 자연환기설비, 기계환기설비, 혼합형(하이브리드) 환기설비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한 경우임(삭제) - 혼합형(하이브리드) 환기설비는 자연 및 기계환기 설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환기설비를 말함(삭제) - 실내공기 오염물질은 초미세먼지(PM2.5) 및 이산화탄소(CO2)를 포함하여 측정할 수 있어야 함 - 공동주택성능등급의 경우에는 전체 세대가 각 등급에 적합하게 적용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구분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단위세대 가중치	1급	2급 + 혼합형(하이브리드) 환기설비를 설치한 경우 또는 (삭제) 단위세대 내에서 실별로 실내공기 오염물질이 측정되고 이에 따른 환기풍량이 자동으로 제어가 되는 경우	1.0	2급	3급 + 단위세대 내에서 실내공기 오염물질이 측정되고 이에 따른 환기풍량이 자동으로 제어가 되는 경우 기계환기설비는 급기 및 배기가 동시에 가동되는 환경에서 바이패스 기능을 확보한 경우(삭제)	0.8	3급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별표3]의 효율적인 환기성능의 확보에 적합한 환기설비가 설치된 경우	0.6	4급	단위세대 내에서 시간당 0.5회에 상응하는 환기회수의 확보가 가능한 환기설비(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삭제)가 설치된 경우	0.4	• 환기성능 및 오염물질 제거 방식을 근거로 평가되도록 기준 개정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요청)
구분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단위세대 가중치																														
1급	2급 + 혼합형(하이브리드) 환기설비를 설치한 경우 또는 단위세대 내에서 실별로 실내공기 오염물질이 측정되고 이에 따른 환기풍량이 자동으로 제어가 되는 경우	1.0																														
2급	3급 + 단위세대 내에서 실내공기 오염물질이 측정되고 이에 따른 환기풍량이 자동으로 제어가 되며, 기계환기설비는 급기 및 배기가 동시에 가동되는 환경에서 바이패스 기능을 확보한 경우	0.8																														
3급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별표3]의 효율적인 환기성능의 확보에 적합한 환기설비가 설치된 경우	0.6																														
4급	단위세대 내에서 시간당 0.5회에 상응하는 환기회수의 확보가 가능한 환기설비(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가 설치된 경우	0.4																														
구분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단위세대 가중치																														
1급	2급 + 혼합형(하이브리드) 환기설비를 설치한 경우 또는 (삭제) 단위세대 내에서 실별로 실내공기 오염물질이 측정되고 이에 따른 환기풍량이 자동으로 제어가 되는 경우	1.0																														
2급	3급 + 단위세대 내에서 실내공기 오염물질이 측정되고 이에 따른 환기풍량이 자동으로 제어가 되는 경우 기계환기설비는 급기 및 배기가 동시에 가동되는 환경에서 바이패스 기능을 확보한 경우(삭제)	0.8																														
3급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별표3]의 효율적인 환기성능의 확보에 적합한 환기설비가 설치된 경우	0.6																														
4급	단위세대 내에서 시간당 0.5회에 상응하는 환기회수의 확보가 가능한 환기설비(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삭제)가 설치된 경우	0.4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8.1 내구성 산출기준										8.1 내구성 산출기준										-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 기준(고시) 동일 항목과 산출기준 일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요청) - 콘크리트 구조기준의 건설기준 코드체계의 전환(2016)에 따라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KDS 14 20 00)으로 개정																																																																																																																																																																																																																																																																																																																																																																					
<table><tr><th colspan="5">항 목</th><th colspan="5">내구성 성능등급</th></tr><tr><th colspan="5"></th><th>1급</th><th>2급</th><th>3급</th><th>4급</th><th colspan="5"></th></tr><tr><td rowspan="12">철근의 피복 두께 (mm)</td><td rowspan="6">일반 지역</td><td rowspan="3">흠에 접하지 않는 부분</td><td>지붕 슬래브· 바닥 슬래브· 비내력벽</td><td>실내</td><td></td><td>40</td><td>30</td><td></td><td rowspan="3">2급 기 준을 만 족 하고, 국 토 교 통 부 에 서 지 정 하</td><td></td><td>40</td><td>30</td><td></td><td rowspan="6">30</td><td rowspan="12"></td></tr><tr><td></td><td>실외</td><td></td><td>50 (마감 면 40)</td><td>40 (마감면 30)</td><td></td><td></td><td>50 (마감 면 40)</td><td>40 (마감면 30)</td><td></td></tr><tr><td>기동·보· 내력벽</td><td>실내</td><td></td><td>50</td><td>40</td><td></td><td></td><td>50</td><td>40</td><td></td></tr><tr><td rowspan="3">흠에 접하는 부분</td><td></td><td>실외</td><td></td><td>60 (마감 면 50)</td><td>50 (마감면 40)</td><td></td><td rowspan="3">2급 기 준을 만 족 하고, 국 토 교 통 부 에 서 지 정 하</td><td></td><td>60 (마감 면 50)</td><td>50 (마감면 40)</td><td></td></tr><tr><td>옹 벽</td><td></td><td></td><td>60</td><td>50</td><td>30</td><td></td><td>60</td><td>50</td><td>30</td></tr><tr><td>기동·보·바닥슬래 브·내력벽</td><td></td><td></td><td>60</td><td>50</td><td>50</td><td></td><td>60</td><td>50</td><td>50</td></tr><tr><td rowspan="6">염해 위험 지역</td><td rowspan="3">구분</td><td>기초·옹벽</td><td></td><td></td><td>80</td><td>70</td><td>70</td><td rowspan="3">“건설신 기술”을 접 촉 부 적 용</td><td></td><td>80</td><td>70</td><td>70</td><td colspan="2" rowspan="6">30 (50*)</td></tr><tr><td>S4</td><td></td><td></td><td>90</td><td>90</td><td>80</td><td></td><td>90</td><td>90</td><td>80</td></tr><tr><td>S3</td><td></td><td></td><td>90</td><td>80</td><td>70</td><td></td><td>90</td><td>80</td><td>70</td></tr><tr><td rowspan="3">구분</td><td>S2</td><td></td><td></td><td>80 (마감 면 70)</td><td>70 (마감면 60)</td><td>60 (마감 면 50)</td><td rowspan="3">“건설신 기술”을 접 촉 부 적 용</td><td></td><td>80 (마감 면 70)</td><td>70 (마감면 60)</td><td>60 (마감 면 50)</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S1</td><td></td><td></td><td>60</td><td>50</td><td>40</td><td></td><td>60</td><td>50</td><td>40</td></tr><tr><td colspan="10">* 철근의 최소피복두께는 상기(피복두께) 치수에서 10mm를 공제한 값임 ** “콘크리트구조기준”에 따를 경우에는 피복두께 항목에 대하여 4급을 인정할 수 있음 *** 철근의 피복두께 1급에서의 “건설신기술”은 철근의 방청과 관련된 기술 분야(방식피복, 방청 혼화제, 전기방식, 방청 철근, 중성화 억제, 방수재 등)로 함</td><td colspan="10"></td></tr></table>										항 목					내구성 성능등급											1급	2급	3급	4급						철근의 피복 두께 (mm)	일반 지역	흠에 접하지 않는 부분	지붕 슬래브· 바닥 슬래브· 비내력벽	실내		40	30		2급 기 준을 만 족 하고, 국 토 교 통 부 에 서 지 정 하		40	30		30			실외		50 (마감 면 40)	40 (마감면 30)			50 (마감 면 40)	40 (마감면 30)		기동·보· 내력벽	실내		50	40			50	40		흠에 접하는 부분		실외		60 (마감 면 50)	50 (마감면 40)		2급 기 준을 만 족 하고, 국 토 교 통 부 에 서 지 정 하		60 (마감 면 50)	50 (마감면 40)		옹 벽			60	50	30		60	50	30	기동·보·바닥슬래 브·내력벽			60	50	50		60	50	50	염해 위험 지역	구분	기초·옹벽			80	70	70	“건설신 기술”을 접 촉 부 적 용		80	70	70	30 (50*)		S4			90	90	80		90	90	80	S3			90	80	70		90	80	70	구분	S2			80 (마감 면 70)	70 (마감면 60)	60 (마감 면 50)	“건설신 기술”을 접 촉 부 적 용		80 (마감 면 70)	70 (마감면 60)	60 (마감 면 50)											S1			60	50	40		60	50	40	* 철근의 최소피복두께는 상기(피복두께) 치수에서 10mm를 공제한 값임 ** “콘크리트구조기준”에 따를 경우에는 피복두께 항목에 대하여 4급을 인정할 수 있음 *** 철근의 피복두께 1급에서의 “건설신기술”은 철근의 방청과 관련된 기술 분야(방식피복, 방청 혼화제, 전기방식, 방청 철근, 중성화 억제, 방수재 등)로 함																				<table><tr><th colspan="5">항 목</th><th colspan="5">내구성 성능등급</th></tr><tr><th colspan="5"></th><th>1급</th><th>2급</th><th>3급</th><th>4급</th><th colspan="5"></th></tr><tr><td rowspan="12">철근의 피복 두께 (mm)</td><td rowspan="6">일반 지역</td><td rowspan="3">흠에 접하지 않는 부분</td><td>지붕슬래브· 바닥슬래브· 비내력벽</td><td>실내</td><td></td><td>40</td><td>30</td><td></td><td rowspan="3">2급 기 준을 만 족 하고, 국 토 교 통 부 에 서 지 정 하</td><td></td><td>40</td><td>30</td><td></td><td rowspan="6">30</td><td rowspan="12"></td></tr><tr><td></td><td>실외</td><td></td><td>50 (마감 면 40)</td><td>40 (마감면 30)</td><td></td><td></td><td>50 (마감 면 40)</td><td>40 (마감면 30)</td><td></td></tr><tr><td>기동·보· 내력벽</td><td>실내</td><td></td><td>50</td><td>40</td><td></td><td></td><td>50</td><td>40</td><td></td></tr><tr><td rowspan="3">흠에 접하는 부분</td><td></td><td>실외</td><td></td><td>60 (마감 면 50)</td><td>50 (마감면 40)</td><td></td><td rowspan="3">2급 기 준을 만 족 하고, 국 토 교 통 부 에 서 지 정 하</td><td></td><td>60 (마감 면 50)</td><td>50 (마감면 40)</td><td></td></tr><tr><td>옹 벽</td><td></td><td></td><td>60</td><td>50</td><td>30</td><td></td><td>60</td><td>50</td><td>30</td></tr><tr><td>기동·보·바닥슬래 브·내력벽</td><td></td><td></td><td>60</td><td>50</td><td>50</td><td></td><td>60</td><td>50</td><td>50</td></tr><tr><td rowspan="6">염해 위험 지역</td><td rowspan="3">구분</td><td>기초·옹벽</td><td></td><td></td><td>80</td><td>70</td><td>70</td><td rowspan="3">“건설신 기술”을 접 촉 부 적 용</td><td></td><td>80</td><td>70</td><td>70</td><td colspan="2" rowspan="6">30 (50*)</td></tr><tr><td>S4</td><td></td><td></td><td>90</td><td>90</td><td>80</td><td></td><td>90</td><td>90</td><td>80</td></tr><tr><td>S3</td><td></td><td></td><td>90</td><td>80</td><td>70</td><td></td><td>90</td><td>80</td><td>70</td></tr><tr><td rowspan="3">구분</td><td>S2</td><td></td><td></td><td>80 (마감 면 70)</td><td>70 (마감면 60)</td><td>60 (마감 면 50)</td><td rowspan="3">“건설신 기술”을 접 촉 부 적 용</td><td></td><td>80 (마감 면 70)</td><td>70 (마감면 60)</td><td>60 (마감 면 50)</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S1</td><td></td><td></td><td>60</td><td>50</td><td>40</td><td></td><td>60</td><td>50</td><td>40</td></tr><tr><td colspan="10">- 철근의 최소피복두께는 상기(피복두께) 치수에서 10mm를 공제한 값임 -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KDS 14 20 00)」에 따를 경우에는 피복두께 항목에 대하여 4급을 인정할 수 있음 - 철근의 피복두께 3급과 4급에서 각각 기준을 만족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는 “건설신 기술”을 흠에 접하는 부분에 추가적으로 적용 시 한 등급씩 상향 - “건설신기술”은 철근의 방청과 관련된 기술 분야 (방식피복, 방청 혼화제, 전기방식, 방청 철근, 중성화 억제, 방수재 등)로 함 - *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을 받은 경우 적용</td><td colspan="10"></td></tr></table>										항 목					내구성 성능등급										1급	2급	3급	4급						철근의 피복 두께 (mm)	일반 지역	흠에 접하지 않는 부분	지붕슬래브· 바닥슬래브· 비내력벽	실내		40	30		2급 기 준을 만 족 하고, 국 토 교 통 부 에 서 지 정 하		40	30		30			실외		50 (마감 면 40)	40 (마감면 30)			50 (마감 면 40)	40 (마감면 30)		기동·보· 내력벽	실내		50	40			50	40		흠에 접하는 부분		실외		60 (마감 면 50)	50 (마감면 40)		2급 기 준을 만 족 하고, 국 토 교 통 부 에 서 지 정 하		60 (마감 면 50)	50 (마감면 40)		옹 벽			60	50	30		60	50	30	기동·보·바닥슬래 브·내력벽			60	50	50		60	50	50	염해 위험 지역	구분	기초·옹벽			80	70	70	“건설신 기술”을 접 촉 부 적 용		80	70	70	30 (50*)		S4			90	90	80		90	90	80	S3			90	80	70		90	80	70	구분	S2			80 (마감 면 70)	70 (마감면 60)	60 (마감 면 50)	“건설신 기술”을 접 촉 부 적 용		80 (마감 면 70)	70 (마감면 60)	60 (마감 면 50)											S1			60	50	40		60	50	40	- 철근의 최소피복두께는 상기(피복두께) 치수에서 10mm를 공제한 값임 -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KDS 14 20 00)」에 따를 경우에는 피복두께 항목에 대하여 4급을 인정할 수 있음 - 철근의 피복두께 3급과 4급에서 각각 기준을 만족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는 “건설신 기술”을 흠에 접하는 부분에 추가적으로 적용 시 한 등급씩 상향 - “건설신기술”은 철근의 방청과 관련된 기술 분야 (방식피복, 방청 혼화제, 전기방식, 방청 철근, 중성화 억제, 방수재 등)로 함 - *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을 받은 경우 적용																		
항 목					내구성 성능등급																																																																																																																																																																																																																																																																																																																																																																																				
					1급	2급	3급	4급																																																																																																																																																																																																																																																																																																																																																																																	
철근의 피복 두께 (mm)	일반 지역	흠에 접하지 않는 부분	지붕 슬래브· 바닥 슬래브· 비내력벽	실내		40	30		2급 기 준을 만 족 하고, 국 토 교 통 부 에 서 지 정 하		40	30		30																																																																																																																																																																																																																																																																																																																																																																											
				실외		50 (마감 면 40)	40 (마감면 30)				50 (마감 면 40)	40 (마감면 30)																																																																																																																																																																																																																																																																																																																																																																													
			기동·보· 내력벽	실내		50	40				50	40																																																																																																																																																																																																																																																																																																																																																																													
		흠에 접하는 부분		실외		60 (마감 면 50)	50 (마감면 40)		2급 기 준을 만 족 하고, 국 토 교 통 부 에 서 지 정 하		60 (마감 면 50)	50 (마감면 40)																																																																																																																																																																																																																																																																																																																																																																													
			옹 벽			60	50	30			60	50	30																																																																																																																																																																																																																																																																																																																																																																												
			기동·보·바닥슬래 브·내력벽			60	50	50			60	50	50																																																																																																																																																																																																																																																																																																																																																																												
	염해 위험 지역	구분	기초·옹벽			80	70	70	“건설신 기술”을 접 촉 부 적 용		80	70	70	30 (50*)																																																																																																																																																																																																																																																																																																																																																																											
			S4			90	90	80			90	90	80																																																																																																																																																																																																																																																																																																																																																																												
			S3			90	80	70			90	80	70																																																																																																																																																																																																																																																																																																																																																																												
		구분	S2			80 (마감 면 70)	70 (마감면 60)	60 (마감 면 50)	“건설신 기술”을 접 촉 부 적 용		80 (마감 면 70)	70 (마감면 60)	60 (마감 면 50)																																																																																																																																																																																																																																																																																																																																																																												
			S1			60	50	40			60	50	40																																																																																																																																																																																																																																																																																																																																																																												
* 철근의 최소피복두께는 상기(피복두께) 치수에서 10mm를 공제한 값임 ** “콘크리트구조기준”에 따를 경우에는 피복두께 항목에 대하여 4급을 인정할 수 있음 *** 철근의 피복두께 1급에서의 “건설신기술”은 철근의 방청과 관련된 기술 분야(방식피복, 방청 혼화제, 전기방식, 방청 철근, 중성화 억제, 방수재 등)로 함																																																																																																																																																																																																																																																																																																																																																																																									
항 목					내구성 성능등급																																																																																																																																																																																																																																																																																																																																																																																				
					1급	2급	3급	4급																																																																																																																																																																																																																																																																																																																																																																																	
철근의 피복 두께 (mm)	일반 지역	흠에 접하지 않는 부분	지붕슬래브· 바닥슬래브· 비내력벽	실내		40	30		2급 기 준을 만 족 하고, 국 토 교 통 부 에 서 지 정 하		40	30		30																																																																																																																																																																																																																																																																																																																																																																											
				실외		50 (마감 면 40)	40 (마감면 30)				50 (마감 면 40)	40 (마감면 30)																																																																																																																																																																																																																																																																																																																																																																													
			기동·보· 내력벽	실내		50	40				50	40																																																																																																																																																																																																																																																																																																																																																																													
		흠에 접하는 부분		실외		60 (마감 면 50)	50 (마감면 40)		2급 기 준을 만 족 하고, 국 토 교 통 부 에 서 지 정 하		60 (마감 면 50)	50 (마감면 40)																																																																																																																																																																																																																																																																																																																																																																													
			옹 벽			60	50	30			60	50	30																																																																																																																																																																																																																																																																																																																																																																												
			기동·보·바닥슬래 브·내력벽			60	50	50			60	50	50																																																																																																																																																																																																																																																																																																																																																																												
	염해 위험 지역	구분	기초·옹벽			80	70	70	“건설신 기술”을 접 촉 부 적 용		80	70	70	30 (50*)																																																																																																																																																																																																																																																																																																																																																																											
			S4			90	90	80			90	90	80																																																																																																																																																																																																																																																																																																																																																																												
			S3			90	80	70			90	80	70																																																																																																																																																																																																																																																																																																																																																																												
		구분	S2			80 (마감 면 70)	70 (마감면 60)	60 (마감 면 50)	“건설신 기술”을 접 촉 부 적 용		80 (마감 면 70)	70 (마감면 60)	60 (마감 면 50)																																																																																																																																																																																																																																																																																																																																																																												
			S1			60	50	40			60	50	40																																																																																																																																																																																																																																																																																																																																																																												
- 철근의 최소피복두께는 상기(피복두께) 치수에서 10mm를 공제한 값임 -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KDS 14 20 00)」에 따를 경우에는 피복두께 항목에 대하여 4급을 인정할 수 있음 - 철근의 피복두께 3급과 4급에서 각각 기준을 만족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는 “건설신 기술”을 흠에 접하는 부분에 추가적으로 적용 시 한 등급씩 상향 - “건설신기술”은 철근의 방청과 관련된 기술 분야 (방식피복, 방청 혼화제, 전기방식, 방청 철근, 중성화 억제, 방수재 등)로 함 - *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을 받은 경우 적용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8.2 가변성 산출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 비율</th><th>성능등급</th></tr> </thead> <tbody> <tr> <td>1급</td><td>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이 10% 미만인 경우</td><td>★★★★</td></tr> <tr> <td>2급</td><td>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이 10% ~ 40% 미만인 경우</td><td>★★★</td></tr> <tr> <td>3급</td><td>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이 40% ~ 70% 미만인 경우</td><td>★★</td></tr> <tr> <td>4급</td><td>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이 70% ~ 100% 미만인 경우</td><td>★</td></tr> </tbody> </table> -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 산정은 세대내부를 기준하며,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평가하여 가장 낮은 등급으로 인정함 - 벽 및 기둥의 길이는 장변의 길이로 산출함	구분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 비율	성능등급	1급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	2급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이 10% ~ 40% 미만인 경우	★★★	3급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이 40% ~ 70% 미만인 경우	★★	4급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이 70% ~ 100% 미만인 경우	★	8.2 가변성 산출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 비율</th><th>성능등급</th></tr> </thead> <tbody> <tr> <td>1급</td><td>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이 10% 미만인 경우</td><td>★★★★</td></tr> <tr> <td>2급</td><td>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이 10% ~ 40% 미만인 경우</td><td>★★★</td></tr> <tr> <td>3급</td><td>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이 40% ~ 70% 미만인 경우</td><td>★★</td></tr> <tr> <td>4급</td><td>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이 70% ~ 100% 미만인 경우</td><td>★</td></tr> </tbody> </table> -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 산정은 세대내부를 기준하며,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평가하여 가장 낮은 등급으로 인정함 - 벽 및 기둥의 길이는 장변의 길이로 산출함 - 원룸과 혼합된 세대의 경우, 일반세대의 내력벽 및 기둥의 비율 평가결과와 원룸세대의 세대간 경계벽의 비내력 비율에 따른 평가결과를 비교하여 낮은 등급을 최종등급으로 부여함 - 원룸 인접세대 경계벽의 비내력벽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함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원룸 인접세대 경계벽의 비내력벽 적용 비율</th><th>성능등급</th></tr> </thead> <tbody> <tr> <td>3급</td><td>원룸 인접세대 경계벽의 비내력벽 적용비율이 50% 이상인 경우</td><td>★★</td></tr> <tr> <td>4급</td><td>원룸 인접세대 경계벽의 비내력벽 적용비율이 50% 미만인 경우</td><td>★</td></tr> </tbody> </table>	구분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 비율	성능등급	1급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	2급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이 10% ~ 40% 미만인 경우	★★★	3급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이 40% ~ 70% 미만인 경우	★★	4급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이 70% ~ 100% 미만인 경우	★	구분	원룸 인접세대 경계벽의 비내력벽 적용 비율	성능등급	3급	원룸 인접세대 경계벽의 비내력벽 적용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4급	원룸 인접세대 경계벽의 비내력벽 적용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 기준(고시) 동일 항목과 산출기준 일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요청)
구분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 비율	성능등급																																							
1급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																																							
2급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이 10% ~ 40% 미만인 경우	★★★																																							
3급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이 40% ~ 70% 미만인 경우	★★																																							
4급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이 70% ~ 100% 미만인 경우	★																																							
구분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 비율	성능등급																																							
1급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																																							
2급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이 10% ~ 40% 미만인 경우	★★★																																							
3급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이 40% ~ 70% 미만인 경우	★★																																							
4급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이 70% ~ 100% 미만인 경우	★																																							
구분	원룸 인접세대 경계벽의 비내력벽 적용 비율	성능등급																																							
3급	원룸 인접세대 경계벽의 비내력벽 적용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4급	원룸 인접세대 경계벽의 비내력벽 적용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별표 2] 신축 비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 세부기준 (제8조 관련)																	
2.5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산출기준	2.5 오존층 보호 및 지구온난화 저감 산출기준	• 오존층파괴지수 및 지구온난화지수 강화 (환경부 요청)															
<table><tr><th>오존층 파괴물질 기준</th><th>점수</th></tr><tr><td>전체 소요 단열재의 80% 이상이 오존층파괴지수(ODP)가 0.003 이하이며, 지구온난화지수(GWP)가 100 이하인 경우</td><td>1</td></tr><tr><td>냉방기기 냉매의 오존층파괴지수(ODP)가 0.003 이하이며, 지구온난화지수(GWP)가 50 이하인 경우</td><td>3</td></tr><tr><td>냉방기기 냉매의 오존층파괴지수(ODP)가 0.003 이하이며, 지구온난화지수(GWP)가 3000 이하인 경우</td><td>1</td></tr></table>	오존층 파괴물질 기준		점수	전체 소요 단열재의 80% 이상이 오존층파괴지수(ODP)가 0.003 이하이며, 지구온난화지수(GWP)가 100 이하인 경우	1	냉방기기 냉매의 오존층파괴지수(ODP)가 0.003 이하이며, 지구온난화지수(GWP)가 50 이하인 경우	3	냉방기기 냉매의 오존층파괴지수(ODP)가 0.003 이하이며, 지구온난화지수(GWP)가 3000 이하인 경우	1	<table><tr><th>오존층 보호 및 지구온난화 저감</th><th>점수</th></tr><tr><td>전체 소요 단열재의 80% 이상이 오존층파괴지수(ODP)가 0이며, 지구온난화지수(GWP)가 100 이하인 경우</td><td>1</td></tr><tr><td>냉방기기 냉매의 오존층파괴지수(ODP)가 0이며, 지구온난화지수(GWP)가 50 이하인 경우</td><td>3</td></tr><tr><td>냉방기기 냉매의 오존층파괴지수(ODP)가 0이며, 지구온난화지수(GWP)가 50 초과 750 이하인 경우</td><td>1</td></tr></table>	오존층 보호 및 지구온난화 저감	점수	전체 소요 단열재의 80% 이상이 오존층파괴지수(ODP)가 0이며, 지구온난화지수(GWP)가 100 이하인 경우	1	냉방기기 냉매의 오존층파괴지수(ODP)가 0이며, 지구온난화지수(GWP)가 50 이하인 경우	3	냉방기기 냉매의 오존층파괴지수(ODP)가 0이며, 지구온난화지수(GWP)가 50 초과 750 이하인 경우
오존층 파괴물질 기준	점수																
전체 소요 단열재의 80% 이상이 오존층파괴지수(ODP)가 0.003 이하이며, 지구온난화지수(GWP)가 100 이하인 경우	1																
냉방기기 냉매의 오존층파괴지수(ODP)가 0.003 이하이며, 지구온난화지수(GWP)가 50 이하인 경우	3																
냉방기기 냉매의 오존층파괴지수(ODP)가 0.003 이하이며, 지구온난화지수(GWP)가 3000 이하인 경우	1																
오존층 보호 및 지구온난화 저감	점수																
전체 소요 단열재의 80% 이상이 오존층파괴지수(ODP)가 0이며, 지구온난화지수(GWP)가 100 이하인 경우	1																
냉방기기 냉매의 오존층파괴지수(ODP)가 0이며, 지구온난화지수(GWP)가 50 이하인 경우	3																
냉방기기 냉매의 오존층파괴지수(ODP)가 0이며, 지구온난화지수(GWP)가 50 초과 750 이하인 경우	1																